

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. 10. 10 선고 2018가단1575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고서천군 수산업협동조합

피고A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8. 10. 1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충남 서천군 B 대 1,417㎡ 중 별지 도면 표시 2, 3, 6, 7,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나)부분 시멘트블록조 건물 60㎡를 철거하고,
나. 위 선내(나)부분 60㎡와 같은 도면 표시 3, 4, 5, 6,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4㎡를 인도하고,
다. 48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4. 1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라. 2018. 2. 26.부터 위 각 토지 인도시까지 매월 6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원고 소유의 충남 서천군 B 대 1,417m² 지상에 피고가 약 30여 년 전부터 권원 없이 어로 활동 및 어획물 판매를 위한 건물을 축조하여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다. 이에 위 건물의 철거 및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위 토지 중 해당 부분의 인도, 그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한다.

2. 무변론 판결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

판사안희길

별지